

[별표 6] <개정 2003.1.16>

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49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삭제 <2003.1.16>

다.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, 2차라 함은 1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하며, 3차라 함은 2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처 분 기 준		
	1차	2차	3차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			
가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	시정명령	시정명령	인가취소
나.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	시정명령	시정명령	승인취소
다.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	시정명령	시정명령	승인취소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·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	허가등의 취 소		
3.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사업중지 또 는 사업계획 변경명령	허가등의 취 소	